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732 발의연월일: 2025. 4. 11.

발 의 자:이언주·오세희·허성무

이개호 · 황 희 · 정성호

황명선 • 주철현 • 신정훈

민병덕 · 소병훈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등에 이용되는 데이터센터(이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라 한다)의 구축 및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인공지능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업무를수행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 개발이 가속화됨에 따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건립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데이터센터가 기피시설로 인식됨에 따라 주거밀집지역이나 학교 인근 지역의 경우 지역주민의 반대로데이터센터 구축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부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산업단지 등에 구축·운영하는 데이터센터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역의 수도권으로부터의 거리, 인구수 및 개발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규모를 달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제25조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0676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구축·운영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역의 수도권으로부터의 거리, 인구수 및 개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따라 지원 규모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
-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0676호 인공지능 발전과	법률 제20676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
법	법
제25조(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관	제25조(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관
련 시책의 추진 등) ①·② (생	련 시책의 추진 등) ①·② (현
략)	행과 같음)
<u><신 설></u>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업무
	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u>에 구축·운영하는 인공지능</u>
	데이터센터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역의 수
	도권으로부터의 거리, 인구수
	및 개발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
	라 지원규모 등에 차등을 둘
	<u>수 있다.</u>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
	<u>역</u>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
	업단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u>하는 지역</u>